

제1차의회운영위원회
2014. 10. 13.(월)11:30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 운영 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홍신

「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한범 의원 외 6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3. 개정이유

- 개업 중인 변호사로 법률고문만 위촉하던 것을 도의회 입법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입법고문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 명칭을 “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”로 함(안 제명)
-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인원 및 자격요건을 정함(안 제2조)
 - 의장은 3인 이내의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음
 - 입법고문은 입법분야 10년 이상인 사람, 법률고문은 도내에 개업중인 변호사로 위촉함

- 입법·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 -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·개정 및 도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등
 -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령해석 및 의회 당사자 소송수행 등
-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필요 시 재위촉 가능함(안 제5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6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수당 및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정함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그동안, 도의회는 입법 및 의정분야에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치법규 제·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의안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,
-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입법고문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